

일본단신뉴스 도쿄aT센터	모든 식품 기능성표시 가능하도록 개선	2014.7.30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소비자청은 18일, 모든 식품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사업자의 책임으로 몸의 특정 부위에 효능을 강조한 표시를 인정하는 방침을 정하여 내년도부터의 도입을 목표로 함.

◇ 현재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 2종

○ 특정보건용식품

- 국가의 허가가 불필요함
- ‘체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줌’ 등의 구체적인 표시가 가능하나 기업 측에는 국가 허가를 받기 까지 시간과 비용이 걸린다는 의견이 강함

※ 특정보건용식품 음료의 표기 예

			
소비자청 허가 특정보건용식품 마크	‘지방 소비에 도움을 줌’ (헬시아 녹차)	‘식사시 지방의 흡수를 억제함’ (메츠콜라)	‘체지방이 신경이 쓰이는 분에 지방의 흡수를 억제함’ (보스 커피)

○ 영양기능식품

- 고령화와 불규칙한 생활에 의해 하루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취할 수없는 경우 등 영양 성분의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그 영양 성분의 기능 표시를 하고 있는 식품
- 나라가 정한 영양 성분의 규격 기준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자 각각의 책임으로 "영양기능식품" 표시와 그 영양 성분의 기능을 표시 가능함

※ 영양기능식품 표기 예

	
현미크림브란(칼슘, 철분)	SOYJOY (칼슘)

◇ 신규 기능성표기 제도

- 대상품목은 야채나 생선, 고기 등의 신선식품 외에 차나 메밀국수 등의 가공품, 영양보조제 등을 전 식품 *주류는 제외함
- 중소기업이 써먹하기 쉽도록 나라의 허가를 필요 없으며 사업자의 책임으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음
- 병의 치료, 예방효과 표시는 인정되지 않고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의 범위에 한하여 간장의 활동에 몸의 구체적인 부위를 들어 표기할 수 있음
예: “간장의 활동에 도움을 줌” “눈 건강을 보조함” 등
- 학술논문이나 최종제품의 임상시험에서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것이 조건으로, 안전성이나 유효성 등의 제품정보를 소비자청에 판매전에 신청을 내야 함

<기능성 표시의 각제도 비교>

	제도	대상	표시 조건	표시 예
기존	특정보건용식품	식품전반	나라가 효능의 근거를 심사	체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줌
	영양기능식품	가공식품 양보조제	영양성분의 작용을 표기하여 판매	칼슘은 뼈나 이빨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
신규	신규 기능성표기	식품전반	기업의 책임으로 효능을 표시	간장의 활동을 보조함

<신규 기능성표시의 이미지>

품목	표시내용(은 기능성분)
온주밀감	β크립톡산틴 을 포함하여 뼈 건강을 유지
내한 시금치	루테인 을 보충해, 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됨
녹차	메틸화카테킨 을 함유하여, 꽃가루가 신경 쓰이는 사람의 눈이나 코의 상태를 바로 잡음
타타르 메밀	루틴 을 함유하여,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됨

◇ 향후 전망

- 효능의 근거가 애매한 건강식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
-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해 소비자의 상담 창구의 설치 등 정보수집 체제의 정비가 촉구됨
- 새로운 표시 제도를 판매촉진 등에 활용하기 위해 좀 더 많은 품목에서 기능성의 해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

◆ 시사점

- 이번에 바뀌는 기능표시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한국식품의 마케팅 효과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나, 식품전반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있어 내년도부터의 도입에 향해 주시 해 나갈 필요가 있음

출 처 : 일본경제신문 (07.19)

일본농업신문 (07.19)